

### **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최인숙)**

- 본 개정조례안은,  
2018. 9. 17.일자 「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가 개정  
· 공포됨에 따라 조직개편에 따른 국 명칭변경과 행정자치위원회  
소관 문화관광실을 삭제하고,
- 신설 부서인 청렴감사관은 행정자치위원회로, 일자리창출실은 복지  
건설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신설 부서의 상임위원회 배정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이 필  
요할 것으로 사료됨.

### **4. 심사결과 : 수정가결**

### **5. 수정사항 : 따로 붙임**

# 수정안 조문대비표

원 안 (개정안)	수 정 안
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행정자치위원회</p> <p>가. 주민자치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나. ~ 다. (생 략)</p> <p>라. &lt;삭 제&gt;</p> <p>마. ~ 바. (생 략)</p> <p><u>사. 청렴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3. 복지건설위원회</p> <p>가.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나. (생 략)</p> <p><u>다. 일자리창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원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(원안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가. ----- -----</p> <p>나. ~ 다. (원안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마. ~ 바. (원안과 같음)</p> <p><u>사. 일자리창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><u>아. 청렴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>3. -----</p> <p>가. ----- -----</p> <p>나. (원안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## 관 련 법

### 지방자치법

[시행 2017. 7. 26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, 타법개정] 행정안전부(자치제도과)

**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**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#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

[시행 2018. 9. 17.] [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939호, 2018. 9. 17., 일부개정] 중구 (기획예산실)

**제3조 (국의 설치)**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주민자치국·복지경제국·안전도시국을 둔다.<개정 2003. 2. 28><개정 2006.11.20><개정 2009.12.28><개정 2012.6.29><개정 2014.12.29><개정 2018.9.17.>

**제4조 (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·보좌기관의 설치)** 부구청장 밑에 기획예산실·일자리창출실, 청렴감사관을 둔다.<개정 2012.6.29><개정 2015.12.31><개정 2018.9.17.>

**제4조의2 (기획예산실)**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구 행정의 종합계획, 조정에 관한 사항
2. 기구, 정원관리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
3. 의회업무에 관한 사항
4. <삭제 2018.9.17.>
5. 공약사항에 관한 사항
6. 자치법규제·개정 및 소송, 통계에 관한 사항
7. 예산 등에 관한 사항
8. 창의혁신 및 지방이양사무에 관한 사항
9.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<신설 2015.12.31>  
<본조신설 2012. 6. 29>

**제4조의3** <삭제 2018.9.17.>

**제4조의4(일자리창출실)** 일자리창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일자리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
2. 청년정책기반 마련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

3.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
4. 도시재생정책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

[본조신설 2018.9.17.]

**제4조의5(청렴감사관)** 청렴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감사 및 조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
2. 공직기강 및 청렴에 관한 사항
3.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
4. 주민고충 및 집단민원 접수·처리에 관한 사항
5. 공공갈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[본조신설 2018.9.17.]